의 안 번 호

1732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1. 4. 30.(금)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21. 4. 30.(금)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21. 5. 14.(금)

### 2. 제안이유

○ 주소정보\*의 관리·활용 중심으로 「도로명주소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로명주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주소정보: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사물 주소

####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 울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 → 울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 나.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안 제2조, 제5조, 제15조)
  -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분야 규정
  -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 추진 근거 마련
  -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 마련
- 다. 건물번호판ㆍ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의 산정(안 제3조)
  - 건물번호판·사물주소판 제작 비용 산정 기준일과 비용 고시(누리집)
  - 비용 산정시 고려사항
  -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

- 라. 주소정보안내시설 등에 광고(안 제4조)
  -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을 광고의 범위로 함
  - 광고시 무료·유료 대상 규정
- 마. 주소정보위원회(안 제6조부터 제13조)
  - (명칭) 주소정보위원회 명칭 변경
  - (구성)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 (5~15인) 이내로 성별고려, 민간위 원은 위원장을 제외 2분의1 이상
  -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
  - (운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담당계장으로 함
- 바. 손해배상 공제가입(안 제14조)
  -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사. 위탁 : 구 →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안 제16조)
- 아. 토지 등의 출입증 : 출입증과 발급대장 서식 신설 (안 제17조)

### **4. 근거법규 :** 「도로명주소법」제31조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는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7574호, 2020. 12. 8. 공포, 2021. 6. 9.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전부 반영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현재 주소체계가 기존 토지지번 기준에서 도로명주소로 전환 시행되었는바 위치추적과 길찾기가 편리한 도로명주소가 구민들의 실생활에 정착되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은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적정하다고 판단됨.

## 근 거 법 규

### 도로명주소법

- 제25조(주소정보기본도 등의 작성 및 활용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공부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이하 "주소정보기본도"라 한다)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소정보기본도를 이용하여 주소정보를 안내할 목적으로 작성한 지도(이하 "주소정보안내도"라 한다)를 제작·배포하거나 주소정보안내판을 설치할수 있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광고는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안내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광고의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인의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광고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 ⑤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거나 그 밖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소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소정보의 내용을 제외하거나 사용 범위를 제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
  - 1. 국가안보나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 비공개사항인 경우
  - ⑦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요청받은 주소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소정보 안내를 목적으로 요청하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 ⑧ 제4항의 광고에 따른 수입 및 제7항의 주소정보 제공에 따른 수입은 주소정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 ⑨ 주소정보기본도, 주소정보안내도 및 주소정보를 이용한 제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지도로 보지 아니한다.
- ① 누구든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 없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된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 정부와 주소정보안내도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항 단서에 따라 주소정보기본도 및 주소정보안내도를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비공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작성 방법, 주소정보안내판의 설치 장소와 규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주소정보 사용 지원) ① 공공기관의 장은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사용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9조(주소정보위원회) ①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 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군·자치구에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 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군·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정보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손해배상 공제 가입,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제33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수 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 제26조(건물번호판의 신청 및 설치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물번호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건물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훼손되거나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하거나 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또는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건물번호를 부여 · 변경하거나 고지한 날
  - 2.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
  -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교부하거나 재교부하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4조(사물주소판의 신청 및 교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사물주소의 부여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교부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물주소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 ④ 사물주소판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사물주소판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물주소판의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물주소판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사물주소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부하는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신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75조(토지 등의 출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부여·변경·폐지, 국가지점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사물주소의 부여·변경·폐지 및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건물등 또는 시설물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건물등·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증을 증표로 대신 사용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